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180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52160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및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A”를 모두 “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2 ‘채권의 표시’를 이 판결의 별지2 ‘채권의 표시’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0행의 “앞서”부터 “각 기재”까지를 “갑 제7, 9, 10, 11, 12, 19, 20호증, 을다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마포구청장,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S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D은행, E은행,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의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당하다. 피고는, 2019. 6. 30. 기준 A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6,103,731,910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평가액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산정 시점이나 근거,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의 “사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2019. 6. 30. 기준 A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자산 총계가 9,819,394,188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도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유형자산 외에도 유동자산 3,663,086,303원(= 재고자산 3,375,215,200원 + 당좌자산 258,534,518원 + 기타 유동자산 29,336,585원), 무형자산 4,654,802원, 기타 비유동자산 5,733,940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당심 증인 B는 ‘제품 재고와 원재료 재고 등이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면서 그 재고들이 전부 산업폐기물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고자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하여는 압류나 경매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건물을 명도할 때 한꺼번에 정리되었다’ 등으로 증언하였는바,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0쪽 제15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반면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1.경 A의 소극재산은 원금만으로도 합계 5,869,302,344원(= 중소기업은행 3,999,444,028원 + E은행 790,000,000원 + D은행 500,000,000원 + 중소기업은행 360,000,000원 + K은행 106,000,000원 + 피고에 대한 2018. 12. 31.자 외상대금 92,696,556원 + 2018. 11.까지의 임금채무 21,161,760원)에 이르고,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10.경에는 위 채무들 중 변제된 채무는 없이 E은행에 대한 채무가 868,552,943원으로,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188,624,699원으로 증가하는 등 소극재산이 더 증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회사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3호증, 을다 제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A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2차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19. 8. 27.경 종료되었고, 2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피고는 2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추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작성한 거래장부(을다 제6호증), 세금계산서 등에 2019. 8.까지의 거래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9. 10. 이후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은 2차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19. 9. 11.을 기준으로 합계 348,624,699원(= 외상매출금 188,624,699원 + 만기미도래 어음 등 160,000,000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금액을 최종 채권금액으로 그대로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2차 근저당권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 13호증, 을다 제2, 3,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A는 피고와 사이의 거래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2018. 7.경부터 A와 사이에 의류 등을 제조하여 A에 납품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A에 대한 외상채무가 늘어나자 추가 거래를 위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1차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1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와 피고 사이에 2019. 2.부터 2019. 8.까지 합계 206,546,643원(= 2019. 2. 67,799,958원 + 2019. 3. 23,135,640원 + 2019. 4. 7,358,890원 + 2019. 5. 43,325,040원 + 2019. 6. 20,579,075원 + 2019. 7. 23,881,880원 + 2019. 8. 20,466,16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의류 등 납품거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결국 A는 피고에게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로부터 의류 등을 납품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A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로 외상매출금 92,696,556원, 만기미도래 어음 180,000,000원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채무액 역시 A와 피고 사이의 의류 등 납품거래로 인한 채무일 뿐만 아니라, A는 1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2019. 2.부터 2019. 8.까지 사이에 피고와 추가로 거래를 하면서 외상매출금을 결제하고 의류 등을 납품받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존 외상매출금 92,696,556원을 초과하는 합계 215,200,000원의 외상대금을 결제하였고, 위 기존 만기미도래 어음 180,000,000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 외상매출금 188,624,699원, 만기미도래 어음 등 160,000,000원은 1차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채무가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니고 1차 근저당권 설정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납품거래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것이었다. 한편 1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원이었는데, 1차 근저당권 설정 후 A와 피고가 결제 및 납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외상매출금은 최대 214,718,254원을 넘지 아니하였는바, A와 피고는 대체로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의류 등 납품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1차 근저당권 설정 당시 기존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 채무액과 추가 거래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1차 근저당권이 A와 피고 사이의 의류 등 납품거래 내지 이를 통한 사업의 계속 추진과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7행의 “라. 사해의사”를 “라.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피고의 선의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4행의 “피고”부터 제6행의 “점”까지를 “피고는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와 사이에 추가 거래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1행, 제12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고치고, 제12행의 “각”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채동수, 판사 박혜선, 판사 임영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장용지 1035㎡

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공장

1층 533.13㎡

2층 533.13㎡

3층 533.13㎡

4층 533.13㎡

5층 533.13㎡

6층 533.13㎡

7층 112.93㎡,

지하1층 595.63㎡

지하2층 674.71㎡

용도내역 지하2층중 549.41㎡ 주차장

56.90 발전실 및 펌프실

64.40 계단 및 기타

지하1층중 242.61㎡ 공장

248.25 주차장, 104.77 계단 및 기타

1층중 409.26㎡ 공장

5.94 수위실, 117.93 계단 및 기타

2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3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4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5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6층중 429.20㎡ 사무실
103.93 계단 및 기타
7층중 48.75㎡ 식당
64.18 계단 및 기타

(이상 주식회사 ☐ 소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동기소 관할)

별지2

채권의 표시

[

